

2027학년도 지역의사 선발전형 안내

REGIONAL PHYSICIAN PROGRAM

Contents

<지역의사 인재상>

I 개요 및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01
II 선발 자격 요건	02
III 학비 지원	06
IV 학비 반환	07
V 조건부 면허와 의무복무	09

VI 전공의 수련	12
VII 의무복무지역 변경	14
VIII 의무 위반 시 제재	15
IX 지역의사 지원	16
[별첨] 지역의사선발전형 안내 체크리스트	17
<지역의사제 요약>	

지역의사

당신이 나고 자란 그곳을 책임집니다

비전1

지역 밀착 일차의료 책임의사

"이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든 내가 먼저 봅니다"

마을을 아는 의사, 환자를 아는 의사
의료취약지의 첫 번째 문



행복군 김○○ 의사 이야기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책임의사 | 내과·가정의학과

오전 8시, 행복군(郡) 보건의료원.

오늘도 어르신 열두 명이 일찍부터 대기실을 채웠습니다.

만성 당뇨, 고혈압, 낙상으로 무릎이 아픈 할머니,
감기를 달고 사는 초등학생...

이 지역에 김 의사가 없었다면,
이 분들은 행복군에서 근처 광역시까지
2시간을 달려야 했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자랐으니까요.
할머니 댁이 어딘지, 아들이 몇 명인지도 압니다.
그래서 진료가 달라집니다.”

김 의사가 책임지는 것



외래
진료

만성질환 관리, 감염 대응,
응급 처치까지



방문
진료

거동 불편한 고령 환자 댁을 직접 방문,
처방·상태 확인



연계
진료

중증 의심 시 즉시 상급병원 연계,
골든타임 확보

비전2

필수·중증·응급의료 책임의사

"이 지역 주민이 쓰러지면 내가 수술실을 엽니다"

외과, 심장, 신경외과, 응급의학 ...
진료권 내 중증의료의 마지막 보루



행복국립대병원 박○○ 의사 이야기

필수·중증·응급 책임의사 | 심장혈관흉부외과

새벽 2시, 응급 호출.

행복군에서 70km 떨어진 마을 주민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실려 왔습니다.

서울 대형병원까지는 4시간 거리. 골든타임은 90분.

이 지역 출신인 이 의사가
이 병원 수술방을 지키고 있지 않았다면,
환자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은 지나가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저 멀리 서울까지 안 가도 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의 심장을 열 수 있는 의사가 여기 있어야 했고,
제가 그 자리를 채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박 의사가 지키는 것



응급
수술

심장·흉부 응급수술 24시간 대응,
골든타임 사수



중증
치료

뇌졸중·중증외상·암 수술 등
지역 내 고난도 처치



지역
수호

어디 살든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의료 완결성 확보

어떤 역할이든, 공통된 정체성은 하나입니다

지역의 주민과 환자를 가장 잘 아는 의사



지역의사 인재상

지역에서 나고 자라 주민과 환자를 가장 잘 아는,
지역의 일차의료와 필수·중증·응급의료를 책임지는 의사

지금 32개 의과대학의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확인하세요 | 2027학년도부터 시작



I 개요 및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1 지역 의사선발전형 개요

지역의사선발전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이하 “복무형 지역의사”)를 지역 내에서 선발·양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지정된 지역에서 근무할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됩니다.

구분	내 용
제도 목적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및 지역의료 질 향상(법 제1조)
법적 근거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39호(2026. 2. 24. 시행)
선발 대상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시행령 제2조제1항, 시행령 별표 1)
선발 규모	2027학년도 490명 ※ 2028~2031학년도 613명
학비 지원	정규 교육과정 내 등록금·기숙사비·교재비 등 지원(법 제5조)
의무복무	졸업 후 의사 면허 취득 시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근무 의무 부담(법 제7조)

2 이 전형에 지원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



이 전형은 의사 면허 취득 후 최소 10년간 근무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본 전형으로 입학하면 졸업하여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순간부터 **최소 10년간** 정부가 지정한 의무복무지역 내 의무복무기관 목록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개인의 희망이나 필요에 따라 근무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사 면허 자체에 의무복무 이행이 법적 조건으로 부여되므로(조건부 면허), 이 조건을 위반하면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학생 및 학부모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

- 1 나의 의무복무지역이 어디인지 입학 전형 공고에서 확인하였습니까?
- 2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만 근무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 3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받은 학비 전액과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4 의무복무 불이행 시 의사 면허가 정지·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5 전공의 수련기간은 원칙적으로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의무복무지역 내에서 수련 시에만 수련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II 선발 자격 요건

1 출신 중학교·고등학교 소재지 및 거주 요건

☞ 법 제4조, 시행령 제2조

구분	세부 내용
학교 소재지 요건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참고 1 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 이수 후 졸업한 사람(고등학교는 졸업예정자 포함)
거주 요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기간 내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진료권 또는 광역권 기준) 에 실제 거주 해야 함 ※ 거주 요건의 '지역'은 학교와 동일한 시·군·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소재지가 속한 진료권 또는 광역권을 의미함(법제처 법령해석, 안전번호2026-0380) 예) 학교는 A시에 있고 거주지가 같은 진료권 내 B사인 경우에도 거주요건 충족 ※ 재학기간 중 일부라도 해당 지역 외로 주소를 이전하면 자격요건 미충족 가능 ※ 기숙사 거주 등 거주요건 해당 여부는 개별 대학 모집 요강 확인 필요 ※ 부모 거주지는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선발 비율	100% 위 요건 충족자로 선발(지역별 세부 비율 - 선발고시 제4조 및 별표 참조) ※ 선발 비율 산정 방식(선발고시 제3조): (당해연도 입학정원 - 2024학년도 입학정원) ÷ 당해연도 입학정원 × 100
경기·인천 특례	경기·인천 소재 의과대학은 광역권 모집 없음 -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동일 진료권 내에서 이수 및 거주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2 중·고교 소재지별 지원 가능 의과대학 및 2027학년도 선발인원

☞ 시행령 별표 1·2, 선발고시

☞ 진료권 선발 vs. 광역권 선발 구분(예시: p.5 하단)

※ 의과대학 소재지 기준 **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 요건 충족 가정**

고등학교 이수 경로	진료권 선발 지원	광역권 선발 지원
동일 진료권 내 이수 ※ 경기·인천은 중·고교 소재지 동일 진료권 내 이수	가능 ✓	가능 ✓
동일 진료권 내 다른 시·군·구로 전학(진료권 내 이동)	가능 ✓	가능 ✓
동일 도(道) 내 다른 진료권으로 전학	불가능 ✕	가능 ✓
동일 광역권 내 다른 시·도(市道)로 전학	불가능 ✕	가능 ✓
다른 광역권으로 전학	불가능 ✕	불가능 ✕

※ 진료권: 지역의사선발전형 실시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의 묶음 단위(시행령 별표2 제2호가목)

※ 광역권: 지역의사선발전형 실시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묶음 단위(시행령 별표2 제2호나목)

※ 진료권·광역권 동시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역의사선발전형 외 일반전형과의 중복지원 지원 가능 여부는 개별 대학 모집 요강 확인 필요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규정은 지역의사선발전형에도 동일하게 적용

☞ **참고 1** 중·고교 소재지별 지원 가능 의과대학

의과대학 소재지	중학교 소재지	고등학교 소재지 → 의무복무지역		지원 가능 의과대학
	광역권	진료권	광역권	
1)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대전·세종·충남·충북	천안권(천안시, 아산시)	대전·세종·충남·충북	건양대, 단국대, 순천향대, 을지대, 충남대
		공주권(공주시, 계룡시)		
		서산권(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논산권(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홍성권(보령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2) 충청북도	대전·세종·충남·충북	청주권(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대전·세종·충남·충북	건국대, 충북대
		충주권(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제천권(제천시, 단양군)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전북	목포권(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진도군, 신안군)	전남광주·전북	전남대, 조선대
		여수권(여주시)		
		순천권(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나주권(나주시, 곡성군, 화순군)		
		해남권(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영광권(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4) 전북특별자치도	전남광주·전북	전주권(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전남광주·전북	원광대, 전북대
		군산권(군산시)		
		익산권(익산시)		
		정읍권(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남원권(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5)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경북	포항권(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대구·경북	경북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영남대
		경주권(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안동권(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구미권(김천시, 구미시,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영주권(영주시, 예천군, 봉화군)		
		상주권(상주시, 문경시)		
6)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울산·경남	창원권(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부산·울산·경남	경상국립대, 고신대, 동아대, 부산대, 울산대, 인제대
		진주권(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통영권(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김해권(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거창권(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7) 강원특별자치도	강원	춘천권(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양구군, 화천군)	강원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연세대, 한림대
		원주권(원주시, 횡성군)		
		영월권(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강릉권(강릉시)		
		동해권(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속초권(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제주권(제주시)	제주	제주대
		서귀포권(서귀포시)		
9) 경기도, 인천광역시 ※ 경기·인천 : 중·고교 소재지 동일 진료권 (별표 2 제1호)	경기도 의정부권(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	가천대, 성균관대, 아주대, 인하대, 차의과학대	
	경기도 남양주권(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경기도 이천권(이천시, 여주시)			
	경기도 포천권(포천시)			
	인천광역시 인천서북권(서구, 강화군)	-		
	인천광역시 인천중부권(중구,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			

참고 2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지역별 배분 인원

1 진료권 선발 ※ 선발 지역(진료권)이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중학교	고등학교	진료권 선발	대학별 지역의사선발전형 정원 배분						학생수
① 대전, 충남		의과대학	건양대	단국대	순천향대	을지대	충남대		전체
		정원	6	15	18	6	27		72
대전·세종· 충남·충북	천안권	천안권	1	3	4	1	6		15
	공주권	공주권	1	1	1	1	2		6
	서산권	서산권	1	3	3	1	5		13
	논산권	논산권	1	2	2	1	3		9
	홍성권	홍성권	1	2	2	1	3		9
② 충북		의과대학	건국대	충북대					전체
		정원	7	39					46
대전·세종· 충남·충북	청주권	청주권	3	19					22
	충주권	충주권	1	6					7
	제천권	제천권	1	2					3
③ 전남광주		의과대학	전남대	조선대					전체
		정원	31	19					50
전남광주·전북	목포권	목포권	6	4					10
	여수권	여수권	2	1					3
	순천권	순천권	7	4					11
	나주권	나주권	3	2					5
	해남권	해남권	2	1					3
	영광권	영광권	2	1					3
④ 전북		의과대학	원광대	전북대					전체
		정원	17	21					38
전남광주·전북	전주권	전주권	7	9					16
	군산권	군산권	1	1					2
	익산권	익산권	1	1					2
	정읍권	정읍권	2	2					4
	남원권	남원권	1	2					3
⑤ 대구, 경북		의과대학	경북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영남대		전체
		정원	26	15	13	5	13		72
대구·경북	포항권	포항권	4	2	2	1	2		11
	경주권	경주권	5	3	2	1	2		13
	안동권	안동권	2	1	1	1	1		6
	구미권	구미권	5	3	2	1	2		13
	영주권	영주권	1	1	1	1	1		5
	상주권	상주권	1	1	1	0	1		4
⑥ 부산, 울산, 경남		의과대학	경상국립대	고신대	동아대	부산대	울산대	인제대	전체
		정원	22	7	17	31	5	15	97
부산·울산· 경남	창원권	창원권	5	1	4	7	1	4	22
	진주권	진주권	3	1	2	4	1	2	13
	통영권	통영권	2	1	1	3	1	1	9
	김해권	김해권	5	1	4	7	1	3	21
	거창권	거창권	1	1	1	1	1	1	6
⑦ 강원		의과대학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연세대	한림대			전체
		정원	6	39	11	7			63
강원	춘천권	춘천권	1	8	2	1			12
	원주권	원주권	1	7	2	1			11
	영월권	영월권	1	2	1	1			5
	강릉권	강릉권	1	4	1	1			7
	동해권	동해권	1	3	1	1			6
	속초권	속초권	1	3	1	1			6
⑧ 제주		의과대학	제주대						전체
		정원	28						28
제주	제주	제주	11						11
	서귀포	서귀포	8						8
⑨ 경기·인천		의과대학	가천대	성균관대	아주대	인하대	차의과학대		전체
		정원	7	3	6	6	2		24
의정부권	의정부권	의정부권	1	1	1	1	0		4
남양주권	남양주권	남양주권	2	1	1	1	1		6
이천권	이천권	이천권	1	0	1	1	0		3
포천권	포천권	포천권	1	1	1	1	1		5
인천서북권	인천서북권	인천서북권	1	0	1	1	0		3
인천중부권	인천중부권	인천중부권	1	0	1	1	0		3
총 계									490 (359)

2 광역권 선발 ※ 선발 지역(광역권) 내 진료권이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중·고등학교	광역권 선발	대학별 지역 의사선발전형 정원 배분							학생수
① 대전, 충남 ② 충북	의과대학	건양대	단국대	순천향대	을지대	충남대	건국대	충북대	전체
	정원	6	15	18	6	27	7	39	118
대전·세종·충남·충북	대전·세종·충남·충북	1	4	6	1	8	2	12	34
③ 전남광주 ④ 전북	의과대학	전남대	조선대	원광대	전북대				전체
	정원	31	19	17	21				88
전남광주·전북	전남광주·전북	9	6	5	6				26
⑤ 대구, 경북	의과대학	경북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영남대			전체
	정원	26	15	13	5	13			72
대구·경북	대구·경북	8	4	4	0	4			20
⑥ 부산, 울산, 경남	의과대학	경상국립대	고신대	동아대	부산대	울산대	인제대		전체
	정원	22	7	17	31	5	15		97
부산·울산·경남	부산·울산·경남	6	2	5	9	0	4		26
⑦ 강원	의과대학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연세대	한림대				전체
	정원	6	39	11	7				63
강원	강원	0	12	3	1				16
⑧ 제주	의과대학	제주대							전체
	정원	28							28
제주	제주	9							9
⑨ 경기·인천	광역권 미선발								
총 계									490 (131)

예시

의과대학	중학교	고등학교	진료권 선발 지원	광역권 선발 지원
건양대, 단국대, 순천향대, 을지대, 충남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충남 천안시(천안권)	천안권 지원 가능 ✓	가능 ✓
		충남 천안시(천안권) + 충남 아산시(천안권) * 같은 진료권 내 전학, 이사 등	천안권 지원 가능 ✓	가능 ✓
		충남 천안권 + 충남 공주권 * 도내 진료권 간 전학, 이사 등	불가능 ✕	가능 ✓
		충남 천안권 + 충북 청주권 + 세종 * 광역 내 다른 지역 간 전학, 이사 등	불가능 ✕	가능 ✓
		충남 천안권 + 전북 전주권 * 다른 광역 간 전학, 이사 등	불가능 ✕	불가능 ✕



III

학비 지원

1 학비 지원 범위 및 지급 절차

☞ 법 제5조, 시행령 제5조, 지원고시 제3·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정규 교육과정에 한하여 재학 기간 동안 다음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	세부 내용
등록금(수업료 포함)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등록금
교재비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교재 구입 비용
실습비	임상 실습 등 교육과정 내 실습 비용
주거비(기숙사비 포함)	기숙사비를 포함한 주거 관련 비용
기타 필수 비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 매년 1월 각 대학에 통지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 게재 예정

☞ 학비 지급 절차(지원고시 제4조)



※ 학비 등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학년별로 산정하여 매년 1월에 각 대학에 통지함

※ 학비 지원 신청 전 대학은 학생에게 학비 납부를 요청하거나 미납을 이유로 제적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음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 근거, 다른 학자금 지원과 중복 수령 불가

2 학비 지원 중단 사유 및 재개

☞ 법 제6조제1항, 시행령 제6조, 지원고시 제5조

중단 사유	중단 기간	지원 재개 시점
① 휴학	- 학기 시작 전 휴학: 휴학 학기부터 복학 이전 학기까지 - 학기 시작 후 휴학: 다음 학기부터 복학 학기까지	- 학기 시작 전 휴학: 복학 학기부터 - 학기 시작 후 휴학: 복학 다음 학기부터
② 유급(留級)	유급이 확정된 재이수 학기	재이수 만료 후 다음 학기부터
③ 정학 등 징계 (학업 일시 중단)	징계 기간 동안	징계 종료 후 학업 재개 학기부터
④ 전과(轉科)	전과 확정일부터 졸업일(제적·자퇴 시 그 날)까지	해당 없음(반환금 발생 대상)

※ 대학의 장은 위 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소된 경우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함



IV 학비 반환

1 반환금 발생 사유 및 산정 방식

☞ 법 제6조제2·3항, 시행령 제7조, 지원고시 제6조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지원받은 학비 전액과 법정이율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사유	세부 내용	이자 기산일
❶ 퇴학·제적 또는 자퇴	재학 중 어떠한 사유로든 학적이 말소된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학적 말소 확정일)
❷ 졸업 후 3년 내 의사 국가시험 미합격	졸업 후 3년 이내에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이후 합격 시 반환금 환급 및 의무복무 적용	해당 사유 발생일(졸업 후 3년 경과일)
❸ 의무복무 중 면허 취소	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면허 취소일)
❹ 의무복무 불이행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면허정지·취소된 경우 포함	• 시정명령 있는 경우: 불이행 사실 확정일 • 시정명령 없는 경우: 불이행 종료일 또는 객관적 확정일

☞ 반환금 산정 공식



반환금 = 지원받은 학비 전액 + 법정이자

※ 법정이자: 지원받은 학비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연 5%) × 학비 지급일부터 위 사유 발생일까지 기간

※ 반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법 제6조제6항).

※ ③의 경우 의무복무한 기간을 고려하여(이행 개월수÷120) 비율로 감면 가능(법 제6조제5항, 시행령 제7조제4항).

※ ②에 해당하여 반환금을 납부한 후 이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납부한 반환금을 환급받고 의무복무 규정이 적용됨(법 제6조제3항).



지역의사제 오해와 진실!

❶ 언제라도 지원받은 학비 전액과 법정이자를 납부하면, 일반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❶ 아닙니다. 반환금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의무복무 불이행에 따라 의무복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❷ 국가시험 3년 이내에 합격하지 못하여 반환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 이후 국가시험 합격 시 일반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❶ 아닙니다. 지역의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반환금 납부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납부하였던 반환금은 환급됩니다. 아울러 선발 당시 의무복무지역에서의 10년의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면허가 발급되며 의무복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핵심

지역의사선발전형 합격생은 반환금 납부 여부, 합격 시점과 관계없이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순간 반드시 조건부 면허를 받게 되며, 의무복무 이행 완료 후에 일반 의사 면허로 전환됩니다.

2 반환금 면제·감면 사유

☞ 법 제6조제4·5항, 시행령 제7조제3·4항

면제·감면 유형	구체적 사유
전부 면제	- 사망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 질병 등 본인에게 책임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행 비율 비례 감면	의무복무 중 면허 취소된 경우(법 제6조제2항제3호): 다음 공식으로 감면 감면액 = 반환금 × (의무복무 이행 개월수 ÷ 120) ※ 예: 5년(60개월) 의무복무 이행 후 면허 취소 시 → 반환금의 50% 감면

3 반환금 납부기한·연장·분할 및 징수

☞ 법 제6조제6항, 시행령 제7조, 지원고시 제7~10조

구분	내용
고지 내용	반환금 고지서에는 다음 사항 포함 - 반환의무자 성명·주소 - 반환금 발생 사유 및 반환 금액·산정 근거 - 납부기한, 납부방법, 기한연장·분할납부 신청 방법 - 감면 관련 사항, 미납 시 강제징수 예고 - 이의신청 방법·기관·기한
납부기한 설정	반환금 고지일로부터 반환금 규모에 따라 다음 기간 내로 설정 - 반환금 5천만 원 이하: 1년 이내 - 반환금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3년 이내 - 반환금 1억 원 초과: 5년 이내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신청	반환의무자가 다음 사유로 납부 곤란 시 3년 범위 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가능 - 재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납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연장 또는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승인된 반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장 또는 분할납부 승인 취소 가능
이의신청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 신청 가능
납부독촉·강제징수	납부기한 경과 시 10일 이상 15일 이내 납부기한을 정해 독촉장 발부 독촉 후에도 미납 시 국세 강제징수 절차 진행



V

조건부 면허와 의무복무

1 조건부 면허의 의미

법 제7조제1항



조건부 면허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10년의 의무복무 이행이 법적 조건**으로 붙은 의사 면허가 부여됩니다. 이를 "조건부 면허"라 합니다.

면허의 조건인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 면허 자격 정지 → 면허 취소**의 단계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년의 의무복무 이행을 완료하면 조건이 해제되어 일반 면허가 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 범위에서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를 것을 면허 조건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2 의무복무 기간·지역·기관

법 제7조제1·2·3항, 시행령 제8조, 복무고시 제2조

구 분	내 용
의무복무 기간	10년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
의무복무지역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로서, 대학 지역의사선발전형 공고에 게시되어 본인이 지원한 전형에 해당하는 의무복무지역 (대학의 장이 반드시 선발과 동시에 공고)
의무복무기관 (복무 가능 기관)	복무형 지역의사가 의무복무를 수 있는 의료기관(이하 "의무복무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다음 의무복무기관의 종류 중에서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수급 현황 및 의료취약지 소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무복무지역별 또는 시·군·구별로 근무가능한 의무복무기관 목록을 작성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의무복무기관 목록 작성·공표(최초 공표 '29.12월 예정) 의무복무기관의 종류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공공보건의료기관)·다목(공공전문진료센터)·마목(책임의료기관)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병원)·마목(정신병원)·바목(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기관 ·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응급실 전담의사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의과대학 소재지별 의무복무지역 대응표(시행령 별표 1·2)

- 진료권 선발 학생은 해당 진료권에서 근무
- 광역권 선발 학생은 해당 도 지역 진료권 중에서 선택하여 근무(단, A진료권에서 B진료권으로 변경 시 자료제출 필요)

선발 의과대학	진료권 (시·군·구 지역명은 p.3 참고)	광역권 (도 지역 내 진료권 중)
건양대, 단국대, 순천향대, 을지대, 충남대	천안권, 공주권, 서산권, 논산권, 홍성권	충청남도
건국대, 충북대	청주권, 충주권, 제천권	충청북도
전남대, 조선대	목포권, 여수권, 순천권, 나주권, 해남권, 영광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원광대, 전북대	전주권, 군산권, 익산권, 정읍권, 남원권	전북특별자치도
경북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영남대	포항권, 경주권, 안동권, 구미권, 영주권, 상주권	경상북도
경상국립대, 고신대, 동아대, 부산대, 울산대, 인제대	창원권, 진주권, 통영권, 김해권, 거창권	경상남도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연세대(원주), 한림대	춘천권, 원주권, 영월권, 강릉권, 동해권, 속초권	강원특별자치도
제주대	제주권, 서귀포권	제주도
가천대, 성균관대(수원), 아주대, 인하대, 차의과학대	의정부권, 남양주권, 이천권, 포천권, 인천서북권, 인천중부권	(광역권 없음)

3 의무복무 기간 산정 방법

시행규칙 제2조, 복무고시 제3조

산정 원칙	내 용
기산 시점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
계산 방법	근무 시작일이 속하는 달부터 의무복무 종료일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실제 근무한 기간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 ※ 실제 근무 기간 = 전체 기간 - 제외 기간(병역, 면허정지 등) ※ 월간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달은 산입 불가(단, 연차유급휴가·공휴일 포함 시 15일 이상이면 산입) ※ 둘 이상의 의무복무기관 근무 시 각 기관 근무 기간 합산하되, 동시 근무 기간은 중복 산입 불가

4 의무복무 기간 제외·산입 규정

☞ 법 제7조제4항, 시행규칙 제2조

☞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불산입)

사 유	세 부 내 용
① 병역의무 이행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된 기간
② 전문의 수련(원칙)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기간 ⚠ 단, 아래 예외(산입 규정)에 해당하면 전부 또는 일부(1/2) 산입
③ 시정명령 불이행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기간
④ 의사 면허 정지·취소	이 법 또는 「의료법」에 따라 면허 자격 또는 효력이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 기간
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 입원·요양 등 직무 외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 불가한 경우 • 육아·질병 등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휴직한 경우 • 국내외 연구·교육기관에서 직무와 무관한 연구·연수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는 기간

사 유	세 부 내 용
① 전문의 수련(예외)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 지역 내 보건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과목* 수련 시 그 수련기간의 전부(법 제7조제4항제2호가목) * 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총 9개) • 그 외 전문과목 수련 시 그 수련기간의 1/2(법 제7조제4항제2호나목) • 인턴과정은 그 기간의 1/2(법 제7조제4항제2호나목 준용)
② 출산	여성 복무형 지역의사가 출산한 경우 3개월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

5 겸직 금지 및 복무 상황 보고 의무

☞ 법 제11·15·16조, 시행규칙 제8조

구 분	내 용
겸직 금지	의무복무 완료 전까지 의무복무지역 외 의료기관 또는 의무복무지역 내 의무복무기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기관 에서 근무 불가 단, 전공의 수련을 위해 근무하는 경우는 예외
자료 제출 요청	관할 시·도지사는 지역의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매년 복무기간·복무상황 확인 자료 제출 요청 가능 의료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복무 상황 보고서 제출 의무
복무 상황 보고	복무형 지역의사는 다음의 경우 관할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15일 이내 보고서 제출 • 의무복무를 시작한 경우 • 의무복무 기간 제외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경우 •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기관이 변경된 경우(이직한 경우)



VI 전공의 수련

1 수련 가능 전문과목 및 수련병원 소재지

☞ 법 제8조, 시행규칙 제3조, 복무고시 제4·7조

구 분	내 용
전문과목의 종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의 의료이용·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 하는 과목 전문과목: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총 26개)
수련병원 소재지	원칙: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 예외: 부득이한 경우 의무복무지역 외 수련 가능(단, 수련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불산입) ※ 의무복무지역 내 9개 과목 수련 불가 시 → 의무복무지역 별도 지정 신청 가능

2 수련기간 복무산입 상세 규정

☞ 법 제7조제4항제2호, 복무고시 제4·7조

원칙적으로 의무복무 기간(10년)에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공의가 수련과정에서 환자 진료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수련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전부 또는 일부 산입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수련 조건	해당 전문과목	복무기간 산입
본인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수련 * 별도 지정 포함	9개 과목(전부 산입): 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수련기간 전부 산입
본인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수련	위 9개 과목 외 나머지 전문과목 및 인턴과정	수련기간의 1/2 산입
본인 의무복무지역 외에서 수련	모든 전문과목, 인턴·레지던트 과정	원칙 적용(산입 불가)

※ 본인 의무복무지역 내에서 9개 과목 수련이 불가한 경우에는 수련기간 동안에 한하여 의무복무지역 별도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지정 시 해당 지역이 의무복무지역으로 간주되어 해당 지역 내 수련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 가능



의무복무지역 외 수련 시 실질적 의무복무 기간

의무복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수련 시 수련기간 전체가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을 의무복무 하여야 합니다.

반면, 의무복무지역 내 9개 과목 수련 시 수련기간이 전부 산입됩니다.

- 가정의학과 3년 수련 → 잔여 의무복무 7년(수련기간 전부 산입)
- 응급의학과 4년 수련(인턴 1년 포함) → 잔여 의무복무 5.5년(수련기간 전부 또는 일부 산입)

3 수련 목적 의무복무지역 별도 지정

시행령 별표3 제3호 가목, 복무고시 제7조

의무복무지역 내 9개 과목 수련이 불가능한 경우, 수련병원 소재지를 별도의 의무복무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내 용
신청 가능 사유	• 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전문과목(복무고시 제4조제2항)을 수련하려고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전문과목의 수련과정을 운영하는 수련병원이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 없는 경우 • 현재 수련 중인 수련병원에서 수련병원 변경 사유(「전문의수련규정」 제13조 각 호)가 발생하여 현재 수련 중인 전문과목의 수련과정을 운영하는 수련병원이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 없는 경우
신청 절차	의무복무지역 별도 지정 신청서(복무고시 별지 서식)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필요시 신청인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가능
지정 고려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련병원 소재 시·군·구를 별도 지정 • 현 의무복무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해당 전문과목 수련병원 존재 여부 • 신청 수련병원의 소재 지역 및 수련 여건 • 현 의무복무지역 내 의료 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 수련 종료 후 현 의무복무지역 복귀 이행 가능 여부
별도 지정의 효력	수련기간 종료 또는 수련과정 중단 시 별도 지정 효력 소멸 → 종전 의무복무지역 복귀

참고 그 밖의 의무복무지역 별도 지정 제도 - 정책적 사유에 따른 별도 지정(학생 신청 사항 아님)

위 수련 목적 별도 지정(복무고시 제7조) 외에,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는 정책적 필요에 따른 두 가지 별도 지정 유형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무복무기관 부재 시 별도 지정(복무고시 제6조)** 의무복무지역 내에 의무복무기관이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의무복무지역을 별도 지정합니다.
- **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별도 지정(복무고시 제8조)**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심각 단계 위기경보 발령 등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②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지역 및 기간을 정해 별도 지정합니다.

※ 두 유형 모두 복무형 지역의사 본인이 신청·수행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며,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기존 의무복무지역(A)에서 별도 지정 지역까지 포함(A + B)으로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VII 의무복무지역 변경

1 변경 가능 사유 및 신청 절차

☞ 법 제9조, 시행규칙 제4조, 복무고시 제5조

복무형 지역 의사는 복무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복무지역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무복무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변경 가능 사유

구 분	내 용
의무복무기관 부재	현재 근무 중인 의무복무기관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며, 현재 의무복무지역에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 지정 해제 등에 의한 의무복무기관 종류 미해당으로 의무복무기관 목록에서 제외된 경우 ※ 연중 해당 사유 발생 시 차년도 의무복무기관 목록에 반영되므로,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의무복무기관으로 유효함 •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폐업·휴업한 경우 •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 취소, 폐쇄명령 또는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의무복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본인·가족 중대 질병·상해	본인 또는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게 중대한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현재 의무복무지역에서 치료 또는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	위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현재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신청 절차

구 분	내 용
신청 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의무복무지역 변경 신청서 + 변경 사유 증빙서류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심사 및 결정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검토의견 작성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이 ① 변경사유 타당성 및 불가피성, ② 현재 지역 및 변경 희망 지역의 의료인력 수급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승인 여부 결정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 승인 여부를 신청인과 관련 시·도지사에 통보 승인 후 즉시 변경된 의무복무지역에서 복무 시작



VIII 의무 위반 시 제재

1 시정명령 → 면허 정지 → 면허 취소 3단계 절차

☞ 법 제16·17조, 시행규칙 제9·10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제재가 단계적으로 부과됩니다.

단계	제재 종류	발동 요건	내용 및 절차
1단계	시정명령	복무형 지역의사가 다음을 위반한 경우 • 의무복무 기간·지역 위반(법 제7조제1항) • 무단 의무복무지역 변경(법 제9조) • 겸직금지 위반(법 제11조제1항) • 복무상황 보고 의무 위반(법 제15조제3항) 지역의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이 다음을 위반하는 경우 • 법 제15조제1항(자료제출 무단 거부) 위반	위반 사항, 법령 근거, 이행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시정명령 이행기간: 위반 유형별 1~2개월 ※ 시·도지사가 시정명령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반사항과 시정명령의 내용 통보
2단계	면허 자격 정지	시정명령 수령 후 이행기간 내 미이행	1년 이내 의사 면허 자격 정지 +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 면허 정지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됨
3단계	면허 취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지속적 불이행)	청문 절차 후 의사 면허 취소 ※ 취소 후 '의무복무 이행 조건부 재교부'만 가능
병행	학비 반환	의무복무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학비 전액 + 법정이율 이자 반환 의무 발생

2 과태료 부과 기준

☞ 법 제18조, 시행령 제12조 별표4

대 상	위반 행위	과태료
복무형 지역의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 원 이하
의료기관의 장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의사 근무 상황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5백만 원 이하
복무형 지역의사	근무 관련 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IX 지역의사 지원

1 복무 중 지원 - 지역의사지원센터

☞ 법 제12·14조,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7조, 지원고시 제12·1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사에게 사명감 부여 및 지속적 근무 촉진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지역의사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지원 종류	세부 내용
주거 안정 지원	의무복무지역 내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직무교육 지원	의무복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지원
경력개발 지원	진로 및 경력개발을 위한 상담·지원
해외 연수 지원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 지원
권익보호	지역의사의 권익보호 및 관련 의견 제시
진로상담·정보 제공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 학생이 지역의사가 되기 위한 진로상담 및 정보 제공

☞ 지역의사지원센터 구성(지원고시 제12조)

구 분	업무 내용
중앙지역의사지원센터	• 권역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및 협력 지원 • 지역의사 지원 관련 표준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지역의사 지원 업무 관련 자료·정보 수집 및 제공
권역지역의사지원센터	• 의과대학 소재지 구분을 고려한 권역 단위 설치·운영 • 지역의사의 진로·경력개발, 직무교육, 국내외 연수, 주거 안정, 권익보호 지원 • 의무복무기관의 종류 및 범위 등에 대한 의견 제시

2 의무복무 완료 후 우대 지원

☞ 법 제12조제2·3항

지원 종류	내 용
공공의료기관 우선 채용	의무복무 완료 후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무복무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 또는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 우대조치 가능
의료취약지 개원 지원	의무복무 완료 후 해당 시·도 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려는 경우 시·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지역의사선발전형 안내 체크리스트

✎ 각 항목을 읽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면 □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구 분	내 용	확인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본 전형으로 입학하면 졸업 후 의사 면허 취득 시점부터 최소 10년간 정부가 지정하는 의무복무지역의 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근무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지역의사법」 제7조제1항)	☐
조건부 의사 면허	취득하는 의사 면허에는 의무복무 이행이 법적 조건으로 부여되며(조건부 면허), 이는 일반 의사 면허와 달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지역의사법」 제7조제1항 후단)	☐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불이행하면 1년 이내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지역의사법」 제17조제1항)	☐
의사 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한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의무복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의무복무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의사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지역의사법」 제17조제2·3·4항)	☐
학비 반환 의무	퇴학·제적·자퇴, 졸업 후 3년 내 의사 국가시험 미합격(3년 이후 의사 국가시험 합격 시 납부한 반환금 환급 및 의무복무 적용), 의무복무 불이행의 경우 지원받은 학비 전액과 법정이율 이자를 합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미납 시 국세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됨을 이해하였습니다. (「지역의사법」 제6조제2·3·6항)	☐
전공의 수련과 의무복무 기간의 관계	전공의 수련기간은 원칙적으로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특히 의무복무지역 외에서 수련하는 경우 수련기간 전체가 불산입되어 전공의 취득 후에도 10년의 의무복무를 추가로 이행해야 함을 이해하였습니다. 의무복무지역 내에서 9개 과목 수련 시에만 수련기간이 전부 산입됨을 이해하였습니다. (「지역의사법」 제7조제4항제2호, 복무고시 제4조)	☐
의무복무지역 공고 확인	지원하는 대학의 입학전형 공고를 통해 나의 의무복무지역을 확인하였으며, 동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함을 이해하였습니다. 의무복무지역 변경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함을 이해하였습니다. (「지역의사법」 제7조제2항, 제9조)	☐
겸직 금지	의무복무 완료 전까지 의무복무지역 외 의료기관 또는 의무복무기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및 면허 제제가 부과됨을 이해하였습니다. (「지역의사법」 제11조제1항)	☐
안내책자 열람 및 충분한 이해 확인	대학이 제공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 안내책자」를 열람하여 내용 전반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이 체크리스트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유 의사에 따라 지원 결정을 하였습니다.	☐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해,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지역의사제 요약

수도권 의료 쏠림과 지역 **필수·공공**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서 인재를 선발하고 교육해 **지역의료**를 책임질 전문 의료인력을 키웁니다.



STEP 1 선발

- 대상** 서울 제외 32개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 신설
- 규모**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 매년 613명 선발
- 요건** 의과대학 소재지에 따라 **중학교는 광역권***, **고등학교는 진료권**** 또는 **광역권에서 입학·졸업**
 - ※ 경기·인천은 광역권 모집이 없으므로 중학교·고등학교 모두 진료권에서 입학·졸업
 - ★ 재학기간 해당 지역(진료권 또는 광역권 기준) 내 거주 필수(부모 거주 요건 없음)
 - * 광역권: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묶음 ** 진료권: 시·군·구의 묶음



STEP 2 교육·지원

- 교육 과정** 대학별 학칙에 따라 **공공의료** 관련 과정과 지역 내 **실습과정** 추가 이수 가능
- 경제적 지원** 등록금, 교재비, 실습비, 기숙사비 등 정규 교육과정 중 **학비 지원**
 - ※ 휴학, 유급, 정학 등 징계, 전과 시 지원 중단, 관련 사유 해소 시 지원 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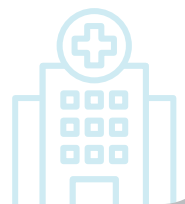
STEP 3 복무·수련

- 의무복무** 의사 면허 취득 후 의무복무지역 내 의무복무 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
- 근무기관** 공공·지역보건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등 **필수의료 수행 기관**
- 수련원칙**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수련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별도 지정 가능
- 수련기간 복무 산입** 9개 과목* 의무복무지역 내 수련 시 **레지던트 기간 전부 산입**, 그 외 과목 인턴은 **수련기간의 1/2 산입**
 - * 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 ※ 군 복무 기간은 복무기간 불산입, 출산 시 3개월 산입 특례 적용



STEP 4 경력·정착 지원

- 경력 지원** 지역의사지원센터를 통해 의무복무 기간 중 **진로·경력 개발**과 직무교육·연수 등 지원
- 정착 지원** 지역의사지원센터를 통해 의무복무 기간 종료 후에도 주거 안정 등 지역 정착 지원
- 의무복무 완료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우선 채용 및 의료취약지 개원 시 행정·재정 지원



STEP 5 관리

- 반환** 제적·자퇴, 3년 이내 의사 국가시험 미합격, **의무복무 불이행** 시 **지원금과 법정이자 반환**
 - ※ **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감면**(이행 개월수/120), 사망·중증장애 등 귀책 없는 사유는 반환 면제
 - ※ 3년 이후 의사 국가시험 합격 시 납부한 반환금 환급 및 의무복무 적용
- 복무관리** 복무상황 변동 시 시·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
 - ※ 의무복무지역·기관이 아닌 곳에서 근무 시 시정명령 또는 면허정지·취소 가능

